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1일, 박수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현 의원)

현행법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

이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지급 대상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로 한정)을 지급 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있음. 이는 임산물생산업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품목, 재배방식 등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함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어 임업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충연)

현행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자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자를 소규모임가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농업을 겸업하는 임업인 등은 당해 연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또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경우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또는 농업 면적직접지불금)의 반납·정산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에서는 법령준수 및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를 이유로 착오지급, 부정수급 적발 등의 사유 외에는 반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또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또는 농업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인바,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림청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참고로, 현행법 제8조제3항제3호의 목적은 중복수령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간 변경을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임산물생산업 및 소규모임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 및 농업면적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8.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직전”을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전”을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 ② (생략)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u>직전</u>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3. ----- ----- ----- ----- ----- <u>해당</u> -----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 -----

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